제86회 학교운영위원회 안건발의서

2023학년도 검정교과서 선정 심의(안)

안건 번호	2022-23

발의년월일 : 2022. 9. 21.
제 안 자 : 학 교 장

1. 제안 이유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라 2023학년도 3월부터 적용되는 교과서(5,6학년 수학, 사회, 과학)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선정교과: 3과목 6종(5,6학년 수학, 사회, 과학)

나. 검정교과서 선정 업무추진 계획 수립(선정 절차 마련)

선정위원 개인별 평가표를 합산하여 3종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추천**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 후 학교장에게 통보 ▶ 학교장 최종 **선정**

다. 교과서 전시(9.1. ~ 10.21.) 및 교과협의회 심사(9.1. ~ 9.16.)

라. 검정교과서 심사 영역별 항목 (~9.6.)

평가영역	평 가 기 준	항목별 점수
I. 교육과정 (10)	학교 교육과정의 성격 및 목표에 부합하고 학습 분량이 단원별로 균형 있게 수업 시수에 맞게 구성되어 있는가?	10
II. 학습내용선정 (20)	학습자의 학년 수준에 맞는 학습 내용과 활동을 다루고 어려운 개념이나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는가?	10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창의성,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내용이나 소재를 다루고 있는가?	10
III. 학습내용조직 (30)	학습 요소가 유용하게 구성되고 시각 자료는 학습 내용과 조화를 이루고 있도록 배치하고 있는가?	10
	학년간, 단원간의 연계 및 계열성을 고려하고 목차의 배열 순서가 논리적으로 정렬되었는가?	10
	학습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자료 및 관련 활동을 다양하게 안내하고 학년 수준별로 학습이 가능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는가?	10
IV. 교수학습활동 (20)	학습자의 참여를 증진시키는 다양한 학습활동(토의, 토론, 실험, 실습)을 제시하고 있는가?	10
	학습주제가 적절하며, 실생활과 관련된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학습활동을 예시하고 있는가?	10
V. 학습평가 (10)	학습단계에 맞는 평가 방법(진단,형성,총괄평가 등)과 다양한 평가유형(선택형, 서답형, 수행 평가 등)을 안내하고 있는가?	10
VI. 표현표기 및 외형체제 (10)	문장이 명료하고, 어법(표준어, 외래어, 띄어쓰기)에 맞으며 전문 용어 등이 현재 규정에 일치하는가?	10
합 계		100

마. 교과협의회에서 교과서 3종 추천서 작성(~ 9.16.)

교과명	순위	출판사명	추천의견
5,6 수학 (수학익힘)	1	아이스크림미디어 (김성여)	● 교육과정의 성격에 맞교 교과목표를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구성 ● 교과목표에 내용이 충실하게 구성 ● 교과용도서를 활용하기에 편리함
	2	미래엔 (장혜원)	● 기본 개념을 적절히 선정하여 교육목표 달성을 잘 할 수 있도록 구성 ● 학습목표가 잘 조직되어 있음
	3	천재교과서 (한대희)	● 기존 학생들이 접하던 교과서와 유사하여 학생들의 접근이 편리함. ● 기본개념과 핵심내용이 적절하게 선정됨
5,6학년 사회 (사회과부도)	1	아이스크림미디어 (한춘희)	● 기본개념과 핵심적인 내용이 적절히 선정되어 학습하기에 편리함 ● 학습자료가 구체적이고 다양하여 문제 해결 중심의 학습이 가능함 ● 내용이 특정분야에 치우치지 않고 조화로움
	2	천재교육 (김정인)	● 교수, 학습 체계가 위계적으로 조직됨 ● 내용이나 용어가 학생의 발달수준에 적합함 ● 활동 과정과 설명이 교과 특성에 맞게 제시됨
	3	미래엔 (전종한)	● 교과용도서를 활용하기에 편리함 ● 단위기준에 맞는 적정 분량의 내용으로 구성됨 ● 내용과 용어가 학생의 발달수준에 적합함
5,6학년 과학 (실험관찰)	1	아이스크림미디어 (현동걸)	● 기본개념과 핵심적 내용이 잘 선정되어 학생들이 학습하기 좋게 구성 ● 창의력과 응용력이 신장될 수 있도록 구성 ● 교수학습자료가 다양하고 활용하기가 편리함
	2	천재교육 (신영준)	● 교과 학습목표에 적절한 내용으로 구성됨 ● 단위기준에 맞는 적정 분량의 내용으로 구성됨 ● 교과용도서를 활용하기에 편리함
	3	미래엔 (신동훈)	● 기본개념과 핵심내용이 적절하게 선정됨 ● 학습 분량을 고려하여 단원 순서를 적절히 배치함 ● 단원간 위계와 연계성이 적절함

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심의의견서(붙임 1- [서식4]) 작성, 학교장 최종결정

- 발행사 운영난 등으로 재주문이 필요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를 별도 개최하지 않고 차순위 도서로 자동 확정할 수 있음.

사. 최종 합격 도서 결과 공개(홈페이지) 및 주문(~10.12).

아. 검인정도서 선정 부조리 예방 연수 실시(붙임 2). 끝.

(붙임 1)

【서식4】

추천 검·인정도서 심의 의견서

□ 해당 과목 : 5,6학년 수학(수학익힘)

□ 심의 의견

원안	수정안	변경 사유

학교운영위원회 작성자 직 위 원 성명 (인)

확인자 직 위원장 성명 (인)

※ 작성자는 학교운영위원, 확인자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함

【서식4】

추천 검·인정도서 심의 의견서

□ 해당 과목 : 5,6학년 사회(사회과부도)

□ 심의 의견

원안	수정안	변경 사유

학교운영위원회 작성자 직 위 원 성명 (인)

확인자 직 위원장 성명 (인)

※ 작성자는 학교운영위원, 확인자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함

【서식4】

추천 검·인정도서 심의 의견서

□ 해당 과목 : 5,6학년 과학(실험관찰)

□ 심의 의견

원안	수정안	변경 사유

학교운영위원회 작성자 직 위 원 성명 (인)

확인자 직 위원장 성명 (인)

※ 작성자는 학교운영위원, 확인자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함

(붙임 2)

교과용도서 선정 관련 부조리 예방 안내문

Ⅰ. 교과용도서 선정 관계자의 범위

○ 교과용도서 선정 관계자에는 학교의 장, **학교운영위원회 위원**과 소속 교원이 포함됩니다.

※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및 제32조,「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3조

○ 교과용도서 선정 관계자는「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공직자 윤리법」 및「청탁금지법」에 따라 **교과용도서 선정과 관련된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Ⅱ. 교과용도서 선정 관련 불공정행위 예시

○ <u>기간에 상관없이</u> 발행사·저작자·도서 판매업자 등이 학교발전기금, 교구·교재, 전시본 이외의 홍보자료 등을 무상 제공하는 행위 또는 학교 측에서 자료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교과서 선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교원이 관계 출판사로부터 명절선물, 상품권 등 기타 금전적인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 각 교과연구회(교사 동아리 등)가 주최하는 연수, 연찬회 등에 발행사, 도서판매업자 등이 교재, 강사료 등 각종 행사비를 지원하는 행위

Ⅲ. 교과용도서 선정 관련 불공정행위 대처요령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등 교과용도서 선정 관계자는 발행사 등의 불공정행위를 목격하거나 불공정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학교의 교과용도서 선정업무 담당자를 통해 각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의 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를 요청하거나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부조리 신고센터 외에도 **(사)한국검인정 교과서협회의 신고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니 활용바랍니다.

※ (사)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 신고센터 : www.ktbook.com / 031-8071-7980

2022학년도 6학년 테마식 현장체험학습 추진 계획(안)

안 건 번 호	2022-24

발의년월일 : 2022. 9. 21.
제 안 자 : 학 교 장

1. 목적

2022학년도 교육과정 운영 계획에 따라 본교 6학년 학생들이 학교 밖 배움의 기회 제공을 통해 자아발견의 기회를 갖고, 고운 심성을 가꾸며 협동심, 공공질서 의식, 공동체 의식 등을 함양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2. 방침

가. 안전사고 예방, 특히 보건 위생에 유념하도록 한다.
나. 문화예술과 자연생태 탐구 체험학습 등의 현장학습을 통해 문화예술에 대한 안목을 키운다.
다. 단체 활동을 통해 고운 심성과 공공 질서 의식, 공동체 의식 등 길러 민주시민으로써 자질을 향상시킨다.
라. 우정을 돈독히 하고 더불어 사는 나를 찾고 원만한 교우관계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마. 다양한 경험과 활동을 통해 자아발견의 기회가 되도록 하여 나아가 청소년으로서 원대한 꿈과 희망을 갖고 진취적인 삶을 설계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한다.

3. 테마식 현장체험학습 준비 사전 협의

가. 일시: 2022. 9.15.(목) 1차 협의회, 2022.10.05.(수) 2차 학생 안전지도 방법 등 협의회
나. 내용: 협의 결과 학생 안전과 코로나19 상황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당일, 소규모 테마식 현장체험학습으로 결정함

4. 테마식 현장체험학습 참가를 위한 학생, 학부모 의견 수렴

가. 방법: 가정통신문(2022. 9. 19.(월)) 발송 및 회수
나. 결과: 26명 참가 희망(26/27, 약 96%) 참가

5. 추진 계획

가. 일시: 2022. 10. 07.(금) 07:40~18:30
나. 장소: 여수 일원
다. 일정: 학교 출발(08:00) → 여수 아르떼 뮤지엄 → 여수 쿠우쿠우 → 여수 레일바이크 → 여수 아쿠아 플라넷 →학교(18:30 도착 예정)
라. 테마식 현장체험학습 참가 대상: 6학년 27명 중 26명(1명 교외체험학습)
마. 인솔 인솔교원: 교감 외 1명(담임교사 오혜림)
바. 예상 비용: 216만원 내외(학교예산으로 전액 지원)

6. 업무 추진 계획

가. 가정통신문 발송(참가 희망 조사, 세부 일정 및 프로그램 안내)
나. 테마식 현장체험학습 세부 계획 수립[잔류(불참) 학생 지도 계획 포함] 및 테마식 현장체험학습 안전 협의회
다. 출발 전 안전예방교육 실시(주의사항 전달)
라. 테마식 현장체험학습 만족 설문지 작성
마. 테마식 현장체험학습 반성회 및 정산
- 현장체험학습 종료 후 10일 이내 정산

‘학업중단 예방 관련’ 학교규칙 개정 (안)

안건 번호	2022-25

발의년월일 : 2022. 9. 23.
제 안 자 : 학 교 장

1. 제안이유

학업중단 예방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을 학교규칙에 반영하도록「초·중등 교육법 시행령」개정

2. 진행절차

가. 관련 공문 접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른 초등학교 학칙 개정
나. 개정안 발의, 교무회의 심의, 최종안 마련
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최종안 확정(재적위원 2/3 찬성)
라. 학칙공포, 학교구성원 대상 연수 및 안내
※ 본 개정내용인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은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 반영 노력 과정 제외(시행령 제9조4항)

3. 심의내용 : 화산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안) - 제10장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

붙임 1. 화산초등학교 학교규칙 신구대조표 1부.
2. 화산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안) 1부.
3. [참고자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발췌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붙임 1) 신구대조표

화산초등학교 학교규칙 주요 변경 사항(2022.10.5.)

영역 (항목)	내용	학교규칙 변경 전(구)	학교규칙 변경 후(신)	비고
제 10 장 학업중단 예방 및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제36조~ 37조 신설		제36조(학업중단예방위원회) ① 학업중단 위기 학생 지원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 수립,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예방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전라북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에 따른다. 제37조(학업중단숙려제) ① 학업중단 예방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 및 숙려제 운영 방법(숙려 기간, 참여 횟수, 참여 대상 및 참여 불가 학생 등)에 대한 사항은 「전라북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에 따른다.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붙임 2) 학교규칙 개정안

화산초등학교 학교규칙

제정(2002.12.16. 제1호)
개정(2007.02.02. 제2호)
개정(2011.04.20. 제3호)
개정(2012.02.14. 제4호)
개정(2013.02.20. 제5호)
개정(2019.04.12. 제6호)
개정(2021.04.08. 제7호)
개정(2022.04.15. 제8호)
개정(2022.10.05. 제9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학교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 화산초등학교의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우리 학교는 화산초등학교라 칭한다.

제3조(위치) 우리 학교는 전라북도 완주군 화산면 화산로 830(지번주소: 완주군 화평리 587)에 둔다.

제2장 수업연한, 학년, 학기 및 휴업일

제4조(수업연한)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단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는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제5조(학년.학기) 학기는 매 학년도를 2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6조(휴업일)

① 휴업일은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 우리 학교의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여름방학
3. 겨울방학
4. 개교기념일 : 4월 10일
5. 학교장재량휴업일
6. 기타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기간

③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휴업 기간은 법정 수업일수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실시한다. 단 학교의 휴업일은 학교장이 정하되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④ 학교장은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한다.

⑤ 학교장은 휴업일이라도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수업을 하거나 실습을 하게 할 수 있다.

⑥ 5항에 따라 학교행사가 개최되는 날을 수업일수에 포함할 수 있으며, 그 수업일수만큼 제1항에 따른 휴업일을 별도로 정해야 한다.

제3장 학급편성 및 학생정원

제7조(학급편성) 학급편성은 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이 통보하는 당해연도 학급편성 기준에 의하여 편성한다.

제8조(학생정원)

① 학생 정원은 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이 배정한 인원으로 한다.

② 학교장은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 중 입학이후 유예 받은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는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제4장 교과•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 수료의 인정

제9조(교육과정 편성 운영)

①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하고, 교육감이 제시한 '전라북도교육과정편성·운영지침' 및 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의 주요 계획을 반영하여 우리 학교 실정에 맞게 편성한다.

② 학교장은 매 학년 초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조직을 구성한다.

제10조(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으며, 수업일 수를 감축한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관할청에 보고한다.

제11조(수업운영 및 체험학습)

①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②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인근학교와 협동교육을 실시하거나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④ 학생의 흥미, 특성과 계절 등을 고려하고 다양한 현장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및 학교생활기록부 관리지침에 의거 학교 간 교환학습 및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출석으로 처리한다.

⑤ 학교장은 보호자의 요구가 있을 시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30일 이내의 보호자 등과 함께하는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으며, 국내.외 구분 없이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나, 천재지변이나 현지 교통사정으로 인한 초과 일은 학교장의 판단에 의하여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해외에 거주하는 친지 방문시에는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⑥ 학교장은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때 지역적 특성이 다른 학교에 취학하는 조건으로 1달간의 학교(도·농)간 교환학습(위탁교육)을 허가할 수 있다. 이때는 상대 학교장의 동의가 있어야하며 이 기간을 수업으로 인정한다. 교환 및 위탁교육 수용교는 교환 및 위탁 기간중에 본인의 과실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⑦ 학교장은 교육의 본질 추구와 학생 개개인의 특기 신장 등을 위하여 교과활동 외에 다양한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⑧ 학생이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단,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1. 천재지변, 감염병 등(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가정학습'을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포함)
2.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각종 대회 및 행사 참여
3. 전출.입으로 인한 소요 일수
4. 교외체험학습 및 교환학습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교외체험학습: 연간 30일 이내, 개인 교환학습: 연간 1개월(4주) 이내, 단체 교환학습: 연간 2주일 이내)
5. 가족 및 친.인척의 경조사로 인한 결석 일수(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함)
6. 기타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⑨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2/3 이상으로 한다.

제12조(평가)

① 학교장은 학업성취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단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학교교육의 본질과 교육의 질적 접근이라는 차원에서 서열화를 조장하는 일제식 지필평가는 지양한다.

② 학교장은 평가항목, 평가시기, 방법 등에 대항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13조(수료 및 졸업)

① 학교장은 본교 전 학년의 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② 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④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제5장 취학의무 유예 및 면제

제14조(취학의무의 면제 등)

①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는 학교장이 의무교육대상자 보호자의 신청으로 이를 결정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한 때에는 보호자와 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취학의무의 면제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및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1. 질병 등으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자
2. 행방불명 중인 자
3. 외국에서 취학하고 있는 자
4. 기타 학교장이 면제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④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다시 이를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유예자의 학적관리)

① 학교장은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 중 입학이후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3월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결석을 한 자로서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의무 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제6장 입학.전학.편입학

제16조(입학 시기 및 편입학시기)

① 입학 시기는 학년 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② 편•입학 시기는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제17조(입학자격)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7조에 의거 우리 학교 학구내 아동으로서 읍·면장이 발행하는 취학통지를 받은 자
2.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재외국민의 자녀
3.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취학학교 변경 아동

제18조(취학학교의 변경)

① 아동의 보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학교가 아닌 우리 학교에 그 아동을 입학시키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에 의하여 입학을 승낙한 경우 그 사실을 당해 아동의 거주지 관할동(면)장에게 통보한다.

제19조(전학)

① 전학의 절차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20조(편입학)

① 외국체류 중 귀국한 아동의 편입학은 체류국 학년에 해당하는 학년으로 편입학한다.

② 편입학 할 수 있는 자는 편입학하는 학년의 전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어야 한다.

③ 제1항의 편입학 아동은 학교장이 요구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재외국민 자녀의 입학 절차 등)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본교에 입학하거나 전입하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거류신고증을 제출받음으로써 입학 또는 전입 절차에 갈음할 수 있다.

제7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22조(조기진급.조기졸업)

① 학교장은 재능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수업연한의 단축(수업상의 특례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급학교 조기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수업연한의 단축은 1회(1년)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상급학교의 조기 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받아 상급학교에 입학한 경우에는 조기졸업을 한 것으로 본다.

③ 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거쳐 학교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을 결정한다.

④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진급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진급.조기졸업.진학평가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 1학년에서 3학년, 2학년에서 4학년, 3학년에서 5학년, 4학년에서 6학년으로 조기 진급할 수 있다.

⑤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진급. 조기졸업.진학평가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 5학년 과정 이수 후 조기 졸업할 수 있다.

제23조(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선정)

①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평가 대상자의 선정은 학생 본인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학년 초 3월 이내에 하도록 한다. 단, 신입생의 경우는 4월 이내에 실시한다.

② 학교장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호 중 2이상을 동시에 만족한 경우에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초 1.2학년은 국어, 수학, 슬기로운 생활) 교과목의 학업성취가 우수한 자

2.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 지수(IQ)가 140 이상인 자

3. 국가기관(중앙행정부처)이 주관.주최한 전 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과 지역예선을 거쳐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올림피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

제24조(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선정 절차)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평가 대상자의 선정은 다음 절차를 따른다.

1. 학생과 학부모의 신청에 의하거나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 후 학급 담임 추천

2. 23조 ②항의 선정 기준 고려

3. 교무회의 심의

4. 학교장 선정

제25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평가)

① 학습 방법은 조기 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의 조기 이수 해당 학년의 교사들의 지도 아래 대상 학생이 주도적이며 자율적으로 학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학교장은 조기 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 학생의 학습을 최대한 지원한다.

③ 조기 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는 진급 또는 상급학교 조기진학에 지장이 없는 기간 중에서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시기에 실시하되 가급적 11월 이내에 실시한다.

④ 조기진급 대상자 및 조기졸업 대상자는 진급 대상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교과목에 대한 조기이수 인정을 받아야한다.

⑤ 해당 학년도 교육과정 교과목의 이수 기준은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가 정하는 평가에 응시하여 해당 교과목 중 과반 이상의 교과목에서 학업성취도가 만점의 80%를 넘어야 한다.

⑥ 과목 이수는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에서 정한 교과목별 조기이수인정평가 기준을 통과한 경우에 이수한 것으로 한다.

⑦ 조기진급자가 진급학년에서 심한 부적응 현상이 있는 경우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희망 사항이나 동의를 받아 다음 학년도 초의 60일 이내에 환원 조치할 수 있다.

제26조(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① 제22조 ②항의 선정대상자 기준에 해당하여 상급학교 조기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심신 발달 및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를 만족한 경우에 중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조기입학 자격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의 학업성취가 우수한 자.

2.「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66조 제2항에 따라 상급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전형기준 응시 가능한 자격을 갖춘 경우

③ 상급학교 조기입학 신청 학생을 대상으로 신청 후 7일 이내에 교과목별 평가를 실시한다.

④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부여할 때에는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⑤ 상급학교 전형 응시 신청자를 대상으로 6학년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교과목에 대한 평가에 응시하여 해당 교과목 중 과반수의 교과목에서 학업성취도가 만점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⑥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과한 학생은 희망한 상급학교 입학 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⑦ 상급학교 입학 전형에 합격을 하면 조기졸업으로 인정한다.

제27조(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위원회)

① 조기진급.조기졸업 대상자의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1. 위원회는 위원장 교감 1인을 포함하여 5~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은 교사, 학부모 및 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3. 교사는 부장교사나 학년담임 교사 등을 포함한다.

②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인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한다.

④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대상 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除斥)된다.

⑤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⑥ 위원이 제④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평가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28조(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위원회의 역할)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과목별 이수인정 기준의 결정
2.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방법의 결정
3.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도구의 제작 또는 선정
4.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및 성적 산출
5. 기타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평가와 관련된 업무

제29조(조기진급 등 대상자의 업무처리)

① 조기진급 등 대상자가 속한 학급의 담임교사가 학교생활기록부 정리, 성적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조기이수 대상자의 해당 학년 교과목의 성적 처리는 성적을 적지 않고 '이수인정'으로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이 규정 이외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학교장이 따로 결정한다.

제8장 교과목별 이수 인정평가(신설)

제30조(목적)

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결석을 한 자로서 정원 외로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 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초(중)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정 학년을 배정하기 위한 교과목별 이수 인정평가의 세부규정을 제시함으로써, 학교에서의 면제 ·유예자의 편입학 업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함이다.

②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이 2004.2.17 개정·시행됨에 따라 동업무의 관련 조항을 학칙에서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관계인의 이해를 돕고, 학교에서의 귀국자 편입학 업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함이다.

제31조(방침)

① 조기진급대상자 및 조기졸업자의 교과목별 이수 인정평가와는 다른 별도의 세부 규정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정원 외 관리자, 면제·유예 자가 재입학 또는 편입학하고자 할 때 정원외 관리나 면제·유예 당시의 학년으로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령에 비해 매우 낮은 학년으로 배정될 수 밖에 없어 학생, 보호자가 학교생활의 원만한 적응을 고려하여 연령에 맞는 학년으로 배정받기를 희망하여, 교과목별 이수 인정평가위원회에서 평가대상자로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선별적으로 교과목별 이수 인정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정원 외 관리자, 면제·유예자 중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대상자의 선정은 의무교육대상자도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2/3이상을 출석해야 해당학년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학년 진급을 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면제·유예 자에 한하여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에서 신중히 결정한다.

④ 귀국자 편입학 시 서류심사를 할 수 있는 구비서류가 없거나 서류심사 결과 연령에 비해 매우 낮은 학년으로 배정되어 학교적응상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선별적으로 실시한다.

⑤ 귀국자 중 교과이수인정평가에 의하여 학년을 배정하는 경우 국내에서 계속 수학한 학생들과 동등 또는 이하의 학년으로 배정한다.

⑥ 귀국자 편입학 시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고려하되, 국내 계속 수학 학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대상자를 선별한다.

⑦ 귀국자 편입학 시 학제차이에 의한 경우가 아닌 학년의 누락, 중복이 있거나 총 수학기간이 부족한 특례대상자가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에 의해 서류심사 시보다 학년을 높게 배정받는 경우 상급학교 진학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확인서를 받는다.

⑧ 해당 학년 학업 수행능력 판별의 적정성 제고를 위하여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타당성, 공정성, 신뢰성을 확보한다.

제32조(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의 구성 : 교감, 교무담당교사, 연구담당교사, 학급담임교사

② 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대상자 선정
2.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기준 결정
3.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실시 및 성적산출
4.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결과 학년 판정
5. 기타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와 관련된 업무

제33조(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①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절차

1. 서류심사에 의하여 학년 판정
2. 학생과 학부모의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신청에 의하여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에서 서류심사결과를 검토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고려하여 교과목별 이수 인정평가 대상자 적격 여부 결정
3.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실시
4.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에서 인정기준에 의하여 학년 판정
5. 학교장의 학년 결정

교과이수인정평가 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서류심사에 의한 학년 판정	학생·학부모의 교과목별 이수 인정평가 신청 교과목별 이수 인정평가 위원회의 대상자 적격여부 판정 - 서류심사결과 검토 - 학생·학부모의 의견고려 - 학생의 정서 및 학교적응력 등 고려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실시	교과목별 이 수 인 정 평 가 위 원 회의 학년 판정	학교장의 학년 결정

② (평가 대상)

1. 정원 외 관리자, 면제·유예 자 :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 자 중 교과이수인정평가를 희망하여 신청한 자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에서 평가대상자로 판정한 자에 한함)
2. 귀국자 : 서류심사 시 학제차이에 의한 경우가 아닌 학년 누락이나 학년 중복, 학업공백 등으로 국내 동급생과 같은 학년으로 배정될 수 없는 학생 중 교과이수인정평가를 희망하여 신청한 자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에서 평가 대상자로 판정한 자에 한함)

③ 평가 교과목

1. 1~2학년 : 국어, 수학, 바른생활, 슬기로운생활
2. 3~6학년 :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④ 평가 방법

1. 정원 외 관리자, 면제·유예 자 : 지필평가
2. 귀국자 :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는 지필평가로 하되, 면접이나 외국학교에서의 성적 등을 참고할 수 있음

⑤ 평가 내용 : 편입학하고자 하는 해당학년의 평가 교과목의 학업수행 기본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내용을 평가한다.

⑥ 평가도구의 제작 또는 선정 : 평가도구는 평가 교과목 담당교사 2인 이상이 공동 제작하며 평가도구 제작의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교과협의회에서 정한다.

⑦ 평가 시기 : 학교실정에 맞게 학교별로 결정

⑧ 평가 기준 : 해당 학년 인정은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모든 교과목에서 6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제34조(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대상자의 편입학 학년 결정)

①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에서 평가 기준에 의거하여 학년을 판정한다.

②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판정결과에 의거 학교장이 편입학 학년을 결정한다.

③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기준에 미달된 자는 서류심사에 의한 배정 학년대로 학년을 결정한다.

④ 학년배정 결과를 1주일이내에 해당 학생·학부모에게 통보한다.

제9장 학생의 포상과 징계

제35조(학생 포상과 징계 등)

① 학교장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과 준법의식을 함양하여 법치주의 사회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생 생활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별도로 정한다.

② 교과발달이나 학교생활, 졸업식 등과 관련한 포상은 교육의 질적 접근 관점에서 지양한다. 단 우리 학교 교원들의 논의과정을 거쳐 학생 시상의 종류, 대상과 방법, 시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③ 학생의 징계와 관련한 필요한 사항은 '화산생활인권규정'에 따른다.

제 10 장 학업중단 예방 및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제36조(학업중단예방위원회)

① 학업중단 위기 학생 지원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 수립,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예방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전라북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에 따른다.

제37조(학업중단숙려제)

① 학업중단 예방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 및 숙려제 운영 방법(숙려 기간, 참여 횟수, 참여 대상 및 참여 불가 학생 등)에 대한 사항은 「전라북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에 따른다.

제11장 학생의 자치활동의 조직과 운영

제38조(학생의 자치활동) 건전한 학생 문화를 조성하고, 지도력과 자치능력을 길러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기 위한 전교 다모임(어린이회)을 조직, 운영한다.

제39조(학생자치회 조직)

① 전교 다모임은 다모임지기(회장) 6학년 1인, 부다모임지기(부회장) 5, 6학년 각 1인을 둔다.

② 학생자치회(전교다모임)의 조직(임원선출 등)과 관련한 사항은 학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40조(학생자치회의 운영)

① 학생 자치는 전교 다모임에서 운영 주제와 내용을 스스로 정하고, 담당교사의 지도(안내)하에 자율적으로 활동한다.

② 학교장은 학생자치회(전교다모임)의 운영(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재정을 학교 회계에 반영하여 지원한다.

제12장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제41조(목적) 이 규칙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제7항에 따라 화산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2조(화산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화산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교원위원 3명, 학부모위원 2명, 지역위원 1명, 총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3조(위원장)

①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임명되거나 위촉된 날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모두 그 날짜가 같은 경우에는 이름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최초 구성 또는 재구성으로 위원장이 아직 호선되지 않은 경우, 교원 위원 중 연장자가 회의 소집 및 안건 상정 등 위원장의 직무를 임시로 대행한다. 소집된 그 회의에서 위원장을 반드시 호선하여야 하며, 임시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 교원 위원의 행위는 호선된 위원장이 한 행위로 본다.

제44조(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① 해당 학교의 교원이었던 위원이 퇴직하거나 소속 학교를 달리하게 된 때

② 해당 학교의 학부모였던 위원의 경우에 해당 학생이 소속 학교를 졸업, 전학, 자퇴하거나 퇴학 된 때. 다만, 해당 학생이 졸업한 경우에는 해당 학년도말까지 위원자격을 유지한다.

제45조(회의의 소집)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위원 전원이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6조(당사자의 출석)

① 위원회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해당 학생이나 그 보호자 및 피해교원(이하 “당사자”라 한다)에게 출석통지서가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회는 당사자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음을 알리고, 당사자가 서면진술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 없이 심의할 수 있다

제47조(위원회의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의결은 의결서로 하며 그 이유란에는 조치의 원인이 된 사실 및 관계 법령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48조(의결 통보 및 처분 등)

① 위원회가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의결서를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조치를 할 때에는 결과통지서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9조(분쟁조정의 신청)

①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은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사건에 대하여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당사자는 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은 해당 사안이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50조(분쟁조정의 개시)

① 위원회가 제9조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시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당사자에게 분쟁조정의 일시 및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분쟁조정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분쟁조정의 기일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 중에서 분쟁조정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분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자문 등을 할 수 있다.

제51조(분쟁조정의 거부ㆍ중지 및 종료)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1.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
2.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상대방을 고소·고발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3.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을 끝낼 수 있다.
1.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는 등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
2. 분쟁조정 개시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한 경우 또는 제2항 제2호에 따라 분쟁조정을 끝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2항 제2호에 따라 분쟁조정을 끝낸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전라북도교권보호위원회에 다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2조(분쟁조정의 결과 처리)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이 성립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주소와 성명
2. 조정 대상 분쟁의 내용
가. 분쟁의 경위
나. 조정의 쟁점(당사자의 의견을 포함한다)
3. 조정의 결과

② 제1항에 따른 합의서에는 당사자와 조정에 참가한 담당자가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53조(보호조치의 권고) 위원회는 학교의 장에게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5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이 아닌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교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지명한다.

제55조(회의록의 작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서명한다.

제56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57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제10조 제4항에 따라 분쟁조정 담당자로 지정되어 분쟁조정을 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장 학교규칙 개정

제60조(학칙개정 절차)

① 학칙은 교직원회의 논의 절차를 거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개정한다.

② 학생이나 학부모의 참여방법 등 학칙 개정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하거나 교직원회의, 전교 다모임, 학부모회의 등에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61조(시행 규칙)

① 이 학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② 학칙에 없는 사항은 초·중등교육법과 동법 시행령, 기타 지침, 훈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부 칙(2002.12.16. 제1호)

1.(시행일) 본교의 학칙은 인가일로부터 시행한다.

2.(시행세칙) 본교의 학칙 시행에 필요한 시행세칙은 학교장이 정한다.

부 칙(2007.02.02. 제2호)

1.(시행일) 본교의 학칙은 인가일로부터 시행한다.

2.(시행세칙) 본교의 학칙 시행에 필요한 시행세칙은 학교장이 정한다.

부 칙(2011.04.20. 제3호)

1.(시행일) 본교의 학칙은 인가일로부터 시행한다.

2.(시행세칙) 본교의 학칙 시행에 필요한 시행세칙은 학교장이 정한다.

부 칙(2012.02.14. 제4호)

1.(시행일) 본교의 학칙은 2012.3.1부터 시행한다.

2.(시행세칙) 본교의 학칙 시행에 필요한 시행세칙은 학교장이 정한다.

부 칙(2013.3.1. 제 5호)

1.(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시행세칙) 본교의 학칙 시행에 필요한 시행세칙은 학교장이 정한다.

부 칙(2019. 4.12. 제 6호)

1.(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4. 8. 제 7호)

1.(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4. 15. 제 8호)

1.(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시행세칙) 본교의 학칙 시행에 필요한 시행세칙은 학교장이 정한다.

부 칙(2022. 10. 5. 제 9호)

1.(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2.(시행세칙) 본교의 학칙 시행에 필요한 시행세칙은 학교장이 정한다.

(붙임 3)[참고자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발췌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2. 8. 30.] [대통령령 제32883호, 2022. 8. 30., 일부개정]

교육부(학교혁신정책과) 044-203-6450
교육부(교육통계과) 044-203-6630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①법 제8조에 따른 학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05. 1. 29., 2011. 3. 18., 2012. 4. 20., 2012. 10. 29., 2020. 2. 25., 2022. 8. 30.>

1.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2.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3. 교과·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수료의 인정
4.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퇴학·수료 및 졸업
5.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6. 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7. 학생 포상, 징계,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 방법, 학업 중단 예방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8.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9. 학칙개정절차
10.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05. 1. 29.>

③ 다음 각 호의 학교·학과·과정 또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학교의 학칙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각각 그 설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15.>

1. 법 제5조에 따른 병설학교
2. 법 제43조의2에 따른 방송통신중학교 또는 법 제51조에 따른 방송통신고등학교
3. 법 제48조에 따른 학과
4. 법 제49조에 따른 시간제 또는 통신제 과정
5. 기숙사

④ 학교의 장은 제1항제7호(학업 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11. 3. 18., 2012. 4. 20., 2013. 2. 15., 2022. 8. 30.>

[제목개정 2011. 3. 18.]

부칙 <제32883호, 2022. 8. 30.>

제2조(학칙의 기재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정 또는 개정된 학칙은 제9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학칙으로 본다. 다만, 학교의 장은 이 영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제9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학업 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해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①법 제8조에 따른 학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①-- ----------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학생 포상, 징계,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 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7. ---------- ------ 방법, 학업 중단 예방 -- ---------- ----------
8.·9. (생 략)	8.·9. (현행과 같음)
10.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10. 그 밖에 ----------
②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학교의 장은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 제1항제7호(학업 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 ---------- ---------- -------- 노력해야 ----.

부 칙

제2조(학칙의 기재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정 또는 개정된 학칙은 제9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학칙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제9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학업 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해야 한다.

제 안 안건명	화산초등학교 입목죽(가이즈카 향나무) 철거 심의(안)

안 건 번 호	2022-26

발의년월일 : 2022. 9. 23.
제 안 자 : 학 교 장
소 관 부 서 : 행 정 실

1. 제안이유

전라북도교육청 교육 현장 일제 잔재 청산과 관련하여 화단에 식재된 가이즈카 향나무는 일제 잔재물로 평가되어 미관상 좋지 않고 채광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주변 화단 식물 생육에 어려움이 발생하므로 가이즈카 향나무를 철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화산초등학교 입목죽 철거

(단위: 주)

계획구분	소재지	종류	수량	처분사유
입목죽 철거	완주군 화산면 화평리 587	가이즈카 향나무	7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한 철거

3. 관련법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3조

4. 진행과정

❍ 2022년 제4회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결과 안내(2022.8.31. 원안가결)
- 안건명: 화산초등학교 입목죽(가이즈카 향나무) 용도폐지 및 제거(안)

❍ 2023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수목관리비 소요액 제출(2022.8.24.)
❍ 2023년 수목관리비 교부 후 가이즈카 향나무 제거, 추후 화초 식재 예정

5. 기대효과

❍ 가이즈카 향나무의 적절한 철거를 통해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올바른 역사의식 고취 및 학교 미관 개선 효과

붙임 일제 잔재 청산 관련 신문기사 1부. 끝.

오뉴스 사회

전북, 학교 곳곳 '일제 잔재' 없앤다...교가·나무 등 교체

JTV 작성 2019.11.12 17:49 수정 2019.11.12 19:01 조회 147 프린트 글자 크기

0
0

전북교육청이 교육 현장에 남아 있는 일재 잔재 개선에 나섰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애국 조회와 훈화, 3·3·7박수처럼 군대나 일제강점기 때 유래한 교육 활동이나 표현을 지양하도록 하고 친일파 인사가 작사·작곡한 교가의 교체를 돕기로 했습니다.

또한 일제강점기 때 학교에 많이 심어진 가이즈카 향나무를 다른 나무로 바꿔 심고 운동장 조회대는 학생 놀이 공간 등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NAVER에서 SBS NEWS를 구독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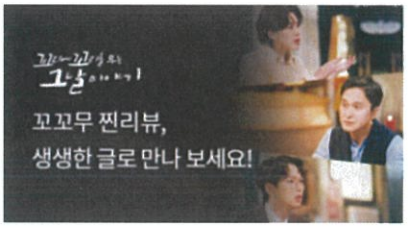

이 시각 인기기사

빌라서 숨진 채 발견됐던 엄마와 딸... 반전 정황 나왔다

TOP

제 안 안건명	2022학년도 화산초등학교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안 건 번 호	2022-27

발의년월일 : 2022. 9. 23.
제 안 자 : 학 교 장
담 당 자 : 행 정 실

Ⅰ. 제안이유

전라북도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의거 2022학년도 화산초등학교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고자 함.

Ⅱ. 주요내용

(단위:천원)

예산구분	경정예산액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예산액	증감률(%)
추경1회	497,194	302,749	194,445	64.2

세입				세출		
장	관	금회	누계	정책사업	금회	누계
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2,515	2,515	인적자원 운용	39,560	43,060
이전수입	교육비특별회계 이전수입	186,851	457,199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50,783	160,536
자체수입	학부모부담수입	1,167	26,868	기본적 교육활동	20,093	68,833
자체수입	행정활동수입	800	2,000	선택적 교육활동	27,865	39,617
기타수입	전년도이월금	3,112	8,612	교육활동 지원	11,994	25,950
합 계		194,445	497,194	학교 일반운영	44,150	157,559
				학교 재무활동	0	1,639
				합 계	194,445	497,194

Ⅲ. 세부 사항

1. 세입 내역

가. 교육경비보조금수입: 2,515천원

나. 교육비특별회계이전수입: 186,851천원

다. 학부모부담수입: 1,167천원

- (주요항목) 우유급식비

라. 행정활동수입: 800천원

- (주요항목) 사용료, 수도광열비, 중계기사용료

마. 전년도이월금: 3,112천원

- (주요항목) 초등 및 유치원 순세계잉여금

2. 세출 내역

가. 인적자원 운용: 39,560천원

- (주요항목) 유치원방과후과정정원외시간제기간제교원 인건비, 교직원연수비

나.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50,783천원

- (주요항목) 학교급식운영, 학생 및 교직원 보건안전관리, 학교환경위생관리, 교육복지, 통학차량운영비, 통학차량안전지도사 인건비

다. 기본적 교육활동: 20,093천원

- (주요항목) 교과활동지원, 과학교과활동, 체육교과활동, 특수교육교과활동, 유치원교과활동, 자율활동, 현장체험학습활동, 진로체험활동

라. 선택적 교육활동: 27,865천원

- (주요항목) 돌봄교실운영, 유치원방과후과정운영, 독서활동운영, 다문화교육운영

마. 교육활동 지원: 11,994천원

- (주요항목) 교무학사운영, 방송실운영, 정보화실운영, 교육환경개선

바. 학교 일반운영: 44,150천원

- (주요항목) 부서기본운영, 병설유치원기본운영, 행정지원인력운용, 학교시설장비유지, 학부모협력, 관계기관협력

붙임 2022학년도 화산초등학교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부.

2022 학년도

화산초등학교 회계 세입 • 세출 예산서 (안)

(1차추경예산)

화산초등학교

화산초등학교 회계 세입 · 세출 예산서

예산 총칙

예산구분 : 추경1회

예산안확정일자	2022-09-23	예산액	497,194,000

제2022학년도 화산초등학교회계 세입 · 세출예산 총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세입 · 세출 각각 302,749,000원"을 "세입 · 세출 각각 497,194,000원"으로 한다.

세입 세출 예산 총괄

회계연도 : 2022
예산구분 : 추경1회
학 교 명 : 화산초등학교

(단위 : 천원)

예산구분	경정예산액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예산액	증감률(%)
추경1회	497,194	302,749	194,445	64.2

세입					세출			
장	관	금회	누계	구성비(%)	정책사업	금회	누계	구성비(%)
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2,515	2,515	0.5	인적자원 운용	39,560	43,060	8.6
이전수입	지방교육행정기관이전수입	186,851	457,199	91.9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50,783	160,536	32.2
자체수입	학부모부담수입	1,167	26,868	5.4	기본적 교육활동	20,093	68,833	13.8
자체수입	행정활동수입	800	2,000	0.4	선택적 교육활동	27,865	39,617	7.9
기타수입	전년도이월금	3,112	8,612	1.7	교육활동 지원	11,994	25,950	5.2
					학교 일반운영	44,150	157,559	31.6
					학교 재무활동	0	1,639	0.3

2022학년도 세입예산명세서

예산구분 : 추경1회 (단위 : 천원)

과목					경정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증감	산출기초(원)	비고
장	관	항	목	원가통계비목					
1.이전수입					459,714	270,348	189,366		
	1.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2,515	0	2,515		
		1.교육경비보조금			2,515	0	2,515		
			1.기초지방자치단체전입금		2,515	0	2,515		
				1.학교교육과정운영지원사업보조금(기초)	2,515	0	2,515	(성립전_1추)진로체험및미래역량강화지원사업 : 2,515,000원*1교= 2,515,000	
	2.지방교육행정기관이전수입				457,199	270,348	186,851		
		1.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수입			457,199	270,348	186,851		
			1.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457,199	270,348	186,851		
				1.학교운영비전입금	207,467	209,921	-2,454	초등기본운영비 : -173,000원 * 1교 = -173,000	
								유치원기본운영비 : -2,281,000원 * 1교 = -2,281,000	
				2.목적사업비전입금	249,732	60,427	189,305	(성립전_1추)맞춤형학습지원학교운영비 : 4,000,000원 * 1교 = 4,000,000	
								(성립전_1추)통학버스운영비 : 6,780,000원 * 1교 = 6,780,000	
								(성립전_1추)통학버스안전지도사인건비 : 123,000원 * 1교 = 123,000	
								(성립전_1추)통학버스안전지도사인건비 : 3,276,000원 * 1교 = 3,276,000	
								(성립전_1추)통학버스안전지도사인건비 : 16,520,000원 * 1교 = 16,520,000	
								(성립전_1추)통학버스안전지도사인건비 : 683,000원 * 1교 = 683,000	
								(성립전_1추)초등돌봄교실운영비 : 2,280,000원 * 1교 = 2,280,000	
								(성립전_1추)교육복지우선지원농어촌연계학교 운영비 : 3,500,000원 * 1교 = 3,500,000	
								(성립전_1추)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비 : 2,407,000원 * 1교 = 2,407,000	
								(성립전_1추)초등돌봄전담사인건비 : 5,018,000원 * 1교 = 5,018,000	
								(성립전_1추)초등돌봄전담사인건비 : 8,748,000원 * 1교 = 8,748,000	
								(성립전_1추)초등돌봄전담사인건비 : 3,979,000원 * 1교 = 3,979,000	
								(성립전_1추)초등돌봄전담사인건비 : 550,000원 * 1교 = 550,000	
								(성립전_1추)시설관리원인건비 : 6,680,000원 * 1교 = 6,680,000	
								(성립전_1추)시설관리원인건비 : 410,000원 * 1교 = 410,000	
								(성립전_1추)시설관리원인건비 : 12,458,000원 * 1교 = 12,458,000	
								(성립전_1추)시설관리원인건비 : 550,000원 * 1교 = 550,000	
								(성립전_1추)시설관리원인건비 : 150,000원 * 1교 = 150,000	

2022학년도 세입예산명세서

예산구분 : 추경1회 (단위 : 천원)

과목					경정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증감	산출기초(원)		비고
장	관	항	목	원가통계비목						
								(성립전_1추)시설관리원인건비 : 936,000원 * 1교 =	936,000	
								(성립전_1추)청소원인건비 : 200,000원 * 1교 =	200,000	
								(성립전_1추)청소원인건비 : 550,000원 * 1교 =	550,000	
								(성립전_1추)청소원인건비 : 18,089,000원 * 1교 =	18,089,000	
								(성립전_1추)청소원인건비 : 555,000원 * 1교 =	555,000	
								(성립전_1추)학교급식운반차량운영비 : 2,450,000원 * 1교 =	2,450,000	
								(성립전_1추)유치원방과후과정시간제기간제인건비 : 16,317,000원 * 1교 =	16,317,000	
								(성립전_1추)유치원방과후과정시간제기간제인건비 : 19,112,000원 * 1교 =	19,112,000	
								(성립전_1추)유치원방과후과정시간제기간제인건비 : 1,713,000원 * 1교 =	1,713,000	
								(성립전_1추)유치원방과후과정시간제기간제인건비 : 1,834,000원 * 1교 =	1,834,000	
								(성립전_1추)다꿈사랑방학교운영비 : 5,000,000원 * 1교 =	5,000,000	
								(성립전_1추)유아학비지원금(교육과정) : 1,200,000원 * 1교 =	1,200,000	
								(성립전_1추)유아학비지원금(교육과정) : 1,200,000원 * 1교 =	1,200,000	
								(성립전_1추)유아학비지원금(교육과정) : 813,000원 * 1교 =	813,000	
								(성립전_1추)유아학비지원금(방과후과정) : 600,000원 * 1교 =	600,000	
								(성립전_1추)유아학비지원금(방과후과정) : 600,000원 * 1교 =	600,000	
								(성립전_1추)유아학비지원금(방과후과정) : 600,000원 * 1교 =	600,000	
								(성립전_1추)친환경농산물,로컬푸드지원금 : 2,459,000원 * 1교 =	2,459,000	
								(성립전_1추)친환경농산물,로컬푸드지원금 : 3,477,000원 * 1교 =	3,477,000	
								(성립전_1추)흡연예방금연실천학교운영비 : 600,000원 * 1교 =	600,000	
								(성립전_1추)조리종사원대체인건비 : 456,000원 * 1교 =	456,000	
								(성립전_1추)조리종사원대체인건비 : 457,000원 * 1교 =	457,000	
								(성립전_1추)조리종사원대체인건비 : 308,000원 * 1교 =	308,000	
								코로나19대응방역활동도우미인건비 : -227,000원 * 1교 =	-227,000	
								(성립전_1추)코로나19대응방역활동도우미인건비 : 6,064,000원 * 1교 =	6,064,000	
								(성립전_1추)특수교육대상학생방과후학교운영비 : 1,800,000원 * 1교 =	1,800,000	
								(성립전_1추)완주교육협력지구과제별운영비 : 8,500,000원 * 1교 =	8,500,000	
								(성립전_1추)초등교사교육과정실천지원비 : 2,700,000원 * 1교 =	2,700,000	

2022학년도 세입예산명세서

예산구분 : 추경1회 (단위 : 천원)

과목					경정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증감	산출기초(원)		비고
장	관	항	목	원가통계비목						
								(성립전_1추)특수교육대상자통학비 : 2,109,000원 * 1교 =	2,109,000	
								(성립전_1추)유치원방과후과정시간제기간제교원성과상여금 : 1,294,000원 * 1교 =	1,294,000	
								(성립전_1추)유치원방과후과정운영비 : 1,500,000원 * 1교 =	1,500,000	
								(성립전_1추)초등돌봄전담사인건비 : 225,000원 * 1교 =	225,000	
								(성립전_1추)초등돌봄전담사인건비 : 225,000원 * 1교 =	225,000	
								(성립전_1추)급식종사자폐암건강검진비 : 390,000원 * 1교 =	390,000	
								(성립전_1추)교과보충(심화)지도수업자료지원비 : 3,500,000원 * 1교 =	3,500,000	
								(성립전_1추)교육시설안전인증사업비 : 3,347,000원 * 1교 =	3,347,000	
								(성립전_1추)전북체육영재선발대회참가비 : 240,000원 * 1교 =	240,000	
2.자체수입					28,868	26,901	1,967			
	1.학부모부담수입				26,868	25,701	1,167			
		1.수익자부담수입			26,868	25,701	1,167			
			1.급식비		26,868	25,701	1,167			
				1.급식비	22,605	22,605	0			
				2.우유급식비	4,263	3,096	1,167	우유급식비 : 480원*15명*162일=	1,167,000	
	2.행정활동수입				2,000	1,200	800			
		1.사용료및수수료			600	0	600			
			1.사용료및수수료		600	0	600			
				1.사용료	600	0	600	강당사용료 : 100,000원*6회=	600,000	
		2.기타행정활동수입			1,400	1,200	200			
			1.이자수입		1,000	1,000	0			
				1.이자수입	1,000	1,000	0			
			2.기타행정활동수입		400	200	200			
				1.기타행정활동수입	400	200	200	수도광열비 : 25,000원*3회=	75,000	
								중계기사용료(전기사용료) : 125,000원*1회=	125,000	
3.기타수입					8,612	5,500	3,112			
	1.전년도이월금				8,612	5,500	3,112			
		1.순세계잉여금			8,612	5,500	3,112			

2022학년도 세입예산명세서

예산구분 : 추경1회 (단위 : 천원)

과목					경정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증감	산출기초(원)		비고
장	관	항	목	원가통계비목						
			1.순세계잉여금		8,612	5,500	3,112			
				1.순세계잉여금	8,612	5,500	3,112	초등순세계잉여금 : 1,988,000원*1교=	1,988,000	
								유치원순세계잉여금 : 1,124,000원*1교=	1,124,000	
세입합계					497,194	302,749	194,445			

2022학년도 세출예산명세서

예산구분 : 추경1회 (단위 : 천원)

사업					경정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원)	
정책	단위	세부	세부항목	원가통계비목					
1.인적자원 운용					43,060	3,500	39,560		
	1.기타 교직원보수				41,860	300	41,560		
		1.교직원대체인건비			41,860	300	41,560		
			1.[유]유치원방과후과정정원외시간제강사인건비		41,860	300	41,560		
				1.기간제교원인건비	38,313	300	38,013	시간외수당초과분 : 10,000원*3시간*43회=	1,290,000
								(성립전_1추)인건비 : 2,719,480원*1명*6월=	16,317,000
								(성립전_1추)인건비 : 3,185,300원*1명*6월=	19,112,000
								(성립전_1추)성과상여금 : 1,293,280원*1명=	1,294,000
				2.기간제교원법정부담금	3,547	0	3,547	(성립전_1추)4대보험기관부담금 : 285,500원*1명*6월=	1,713,000
								(성립전_1추)4대보험기관부담금 : 305,600원*1명*6월=	1,834,000
	2.교직원 복지 및 역량강화				1,200	3,200	-2,000		
		1.교직원역량강화			1,200	3,200	-2,000		
			1.[초]직무연수		1,200	3,200	-2,000		
				1.일반수용비	1,200	3,200	-2,000	교육경비 : -200,000원*10명*1회=	-2,000,000
2.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160,536	109,753	50,783		
	1.급식 관리				98,292	87,128	11,164		
		1.학교급식운영			98,292	87,128	11,164		
			1.[초]급식재료구입비		79,724	73,788	5,936		
				1.급식용식재료비	79,724	73,788	5,936	(성립전_1추)식품비 : 3,477,000원*1회=	3,477,000
								(성립전_1추)식품비 : 2,459,000원*1회=	2,459,000
			2.[초]우유급식비		4,263	3,096	1,167		
				1.우유급식비	4,263	3,096	1,167	우유대금 : 480원*15명*162일=	1,167,000
			3.[초]급식운영비		10,134	9,744	390		
				1.일반수용비	5,744	5,744	0		
				2.연료비	4,000	4,000	0		
				3.교직원복지비	390	0	390	(성립전_1추)급식종사자폐암건강검진비 : 130,000원*3명=	390,000
			4.[초]급식기구확충비		500	500	0		
				1.비품구입비	500	500	0		

2022학년도 세출예산명세서

예산구분 : 추경1회 (단위 : 천원)

사업					경정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원)	
정책	단위	세부	세부항목	원가통계비목					
			5.[초]대체인건비		1,221	0	1,221		
				1.기간제직원인건비	1,221	0	1,221	(성립전_1추)조리종사원대체인건비 : 76,860원*1명*4일=	308,000
								(성립전_1추)조리종사원대체인건비 : 76,000원*1명*6일=	456,000
								(성립전_1추)조리종사원대체인건비 : 76,160원*1명*6일=	457,000
			6.[초]급식차량운영비		2,450	0	2,450		
				1.일반수용비	1,440	0	1,440	(성립전_1추)운영용품비 : 55,000원*8회=	440,000
								(성립전_1추)차량수리비 : 200,000원*5회=	1,000,000
				2.연료비	660	0	660	(성립전_1추)차량유류비 : 1,650원*40ℓ*10회=	660,000
				3.기타공공요금	350	0	350	(성립전_1추)보험료,자동차세 : 175,000원*2회=	350,000
	2.보건관리				28,100	21,263	6,837		
		1.[국고]학생및교직원보건안전관리			14,470	8,033	6,437		
			1.[초]응급학생후송비		100	100	0		
				1.학생복지비	100	100	0		
			2.[초]학생건강검사		1,133	1,133	0		
				1.학생복지비	1,133	1,133	0		
			3.[초]보건실운영		6,800	6,800	0		
				1.교육운영비	1,500	1,500	0		
				2.학생복지비	4,000	4,000	0		
				3.일반업무추진비	300	300	0		
				4.비품구입비	1,000	1,000	0		
			4.[국고][초](국고)흡연예방금연실천학교운영		600	0	600		
				1.교육운영비	600	0	600	(성립전_1추)교육주간교육활동물품비 : 20,000원*5종=	100,000
								(성립전_1추)캠페인홍보용품비 : 3,000원*100개=	300,000
								(성립전_1추)캠페인간식비 : 2,000원*100개=	200,000
			5.[초]방역활동도우미운영		5,837	0	5,837		
				1.기간제직원인건비	5,379	0	5,379	인건비 : -35,000원*1명*1월=	-35,000
								(성립전_1추)인건비 : 1,082,800원*1명*5월=	5,414,000
				2.기간제직원법정부담금	458	0	458	4대보험기관부담금 : -192,000원*1명*1월=	-192,000

2022학년도 세출예산명세서

예산구분 : 추경1회 (단위 : 천원)

사업					경정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원)	
정책	단위	세부	세부항목	원가통계비목					
								(성립전_1추)4대보험기관부담금 : 130,000원*1명*5월=	650,000
		2.학교환경위생관리			13,630	13,230	400		
			1.[초]먹는물관리		7,200	7,200	0		
				1.일반수용비	7,200	7,200	0		
			2.[초]공기질측정		4,780	4,380	400		
				1.일반수용비	4,780	4,380	400	공기정화장치임대 : 40,000원*10대*1월=	400,000
			3.[초]방역관리		1,650	1,650	0		
				1.일반수용비	1,650	1,650	0		
	3.학생복지				34,144	1,362	32,782		
		1.교육복지우선			3,500	0	3,500		
			1.[초]교육복지사업 운영비		3,500	0	3,500		
				1.운영수당	3,000	0	3,000	(성립전_1추)학생상담강사료 : 50,000원*60회=	3,000,000
				2.학생복지비	500	0	500	(성립전_1추)위기학생지원물품비 : 100,000원*5종=	500,000
		2.학생복지운영			30,644	1,362	29,282		
			1.[초]졸업앨범제작		1,200	1,200	0		
				1.학생복지비	1,200	1,200	0		
			2.[초]학생교과서구입		162	162	0		
				1.교육운영비	162	162	0		
			3.[초]통학차량(임차)운영		8,680	0	8,680		
				1.일반수용비	3,320	0	3,320	(성립전_1추)운영용품비 : 100,000원*5회=	500,000
								차량수리비 : 200,000원*5회=	1,000,000
								(성립전_1추)차량수리비 : 182,000원*10회=	1,820,000
				2.연료비	4,860	0	4,860	차량유류비 : 1,800원*100ℓ*5회=	900,000
								(성립전_1추)차량유류비 : 1,650원*120ℓ*20회=	3,960,000
				3.기타공공요금	500	0	500	(성립전_1추)보험료,자동차세 : 250,000원*2회=	500,000
			4.[초]통학차량안전지도사인건비		20,602	0	20,602		
				1.무기계약직원인건비	18,735	0	18,735	(성립전_1추)인건비 : 1,294,080원*1명*12월=	15,529,000
								(성립전_1추)인건비 : 683,000원*1명*1월=	683,000

2022학년도 세출예산명세서

예산구분 : 추경1회 (단위 : 천원)

사업					경정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원)	
정책	단위	세부	세부항목	원가통계비목					
								(성립전_1추)연차수당 : 991,000원*1명*1회=	991,000
								(성립전_1추)퇴직적립금 : 1,486,000원*1명*1회=	1,486,000
								(성립전_1추)퇴직적립금 : 46,000원*1명*1회=	46,000
				2.무기계약직원법정부담금	1,867	0	1,867	(성립전_1추)4대보험기관부담금 : 149,110원*1명*12월=	1,790,000
								(성립전_1추)4대보험기관부담금 : 77,000원*1명*1월=	77,000
3.기본적 교육활동					68,833	48,740	20,093		
	1.교과 활동				40,352	26,510	13,842		
		1.교과활동지원			13,380	7,200	6,180		
			1.[초]학습준비물구입		2,320	2,360	-40		
				1.학습준비물	2,320	2,360	-40	학습준비물구입 : -40,000원*1명*1회=	-40,000
			2.[초]보결수업관리		1,000	1,000	0		
				1.운영수당	1,000	1,000	0		
			3.[초]기초학력지도		6,560	3,840	2,720		
				1.운영수당	6,560	3,840	2,720	(성립전_1추)강사료 : 32,000원*125시간=	4,000,000
								강사료 : -32,000원*2시간*2학급*10주=	-1,280,000
			4.[초]교과보충(심화)지도자료지원		3,500	0	3,500		
				1.교육운영비	3,500	0	3,500	(성립전_1추)운영물품구입 : 250,000원*14종=	3,500,000
		2.과학 교과활동			3,200	3,200	0		
			1.[초]학습준비물지원		3,200	3,200	0		
				1.학습준비물	2,930	3,200	-270	실험실습재료비 : -270,000원*1학급*1회=	-270,000
				2.비품구입비	270	0	270	안전보호구함구입 : 270,000원*1개=	270,000
		3.체육 교과활동			1,040	800	240		
			1.[초]교과운영		1,040	800	240		
				1.교육운영비	740	500	240	(성립전_1추)체육영재선발대회참가비 : 40,000원*6명=	240,000
				2.비품구입비	300	300	0		
		4.특수교육교과활동			6,409	2,500	3,909		
			1.[초]교과운영		2,000	2,000	0		
				1.교육운영비	1,500	1,500	0		

2022학년도 세출예산명세서

예산구분 : 추경1회 (단위 : 천원)

사업					경정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원)	
정책	단위	세부	세부항목	원가통계비목					
				2.비품구입비	500	500	0		
			2.[초]학습준비물지원		500	500	0		
				1.학습준비물	500	500	0		
			3.[초]특수교육대상자통학비지원		2,109	0	2,109		
				1.학생복지비	2,109	0	2,109	(성립전_1추)통학비 : 200원*32.34km*2명 *163일=	2,109,000
			4.[초]특수교육대상자방과후학교운영		1,800	0	1,800		
				1.교육운영비	1,800	0	1,800	(성립전_1추)외부방과후학교운영비 : 100,000원*2명*9회=	1,800,000
		5.유치원 교과활동			16,323	12,810	3,513		
			1.[유]교과운영		11,010	12,510	-1,500		
				1.운영수당	240	240	0		
				2.교육운영비	9,570	11,070	-1,500	행사및현장체험학습경비 : -37,500원*4명 *10회=	-1,500,000
				3.도서구입비	1,200	1,200	0		
			2.[유]학습준비물지원		300	300	0		
				1.학습준비물	300	300	0		
			3.[유]누리과정지원		5,013	0	5,013		
				1.교육운영비	5,013	0	5,013	(성립전_1추)교육과정운영 : 67,740원*4명 *3월=	813,000
								(성립전_1추)교육과정운영 : 100,000원*4명*3월=	1,200,000
								(성립전_1추)교육과정운영 : 100,000원*4명*3월=	1,200,000
								(성립전_1추)방과후과정운영 : 50,000원*4명*3월=	600,000
								(성립전_1추)방과후과정운영 : 50,000원*4명*3월=	600,000
								(성립전_1추)방과후과정운영 : 50,000원*4명*3월=	600,000
	2.창의적 체험활동				28,481	22,230	6,251		
		1.자율활동			17,700	9,700	8,000		
			1.[초]학생회활동지원		2,500	3,000	-500		
				1.학생복지비	2,500	3,000	-500	학생자치회운영 : -100,000원*5종*1회=	-500,000
			2.[초]학급교육활동경비		3,500	3,500	0		
				1.교육운영비	3,500	3,500	0		
			3.[초]체육대회		200	200	0		

2022학년도 세출예산명세서

예산구분 : 추경1회 (단위 : 천원)

사업					경정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원)	
정책	단위	세부	세부항목	원가통계비목					
				1.교육운영비	200	200	0		
			4.[초]학교자율선택과제		3,000	3,000	0		
				1.교육운영비	3,000	3,000	0		
			5.[초]따뜻한학교운영		6,500	0	6,500		
				1.교육운영비	6,100	0	6,100	(성립전_1추)화산의숙운영물품구입 : 50,000원*29종*2회=	2,900,000
								(성립전_1추)마을여행운영재료구입및입장료 : 200,000원*6학급=	1,200,000
								(성립전_1추)놀이수업재료구입 : 100,000원*5종*2회=	1,000,000
								(성립전_1추)환경생태교육재료구입 : 100,000원*5종*2회=	1,000,000
				2.목적사업업무추진비	400	0	400	(성립전_1추)협의회비 : 100,000원*4회=	400,000
			6.[초]뮤지컬프로젝트		2,000	0	2,000		
				1.운영수당	2,000	0	2,000	(성립전_1추)강사료 : 40,000원*50시간=	2,000,000
		2.현장체험학습활동			6,096	9,760	-3,664		
			1.[초]수학여행		3,416	3,800	-384		
				1.여비	200	800	-600	인솔교사여비 : -200,000원*3명*1회=	-600,000
				2.교육운영비	3,216	3,000	216	숙박비 : -60,000원*20명*1회=	-1,200,000
								(성립전_1추)숙박비 : 30,000원*20명*1회=	600,000
								식비 : 2,500원*27명*1회=	68,000
								차량임차료 : -750,000원*1대*2일=	-1,500,000
								(성립전_1추)차량임차료 : 600,000원*1대*2일=	1,200,000
								체험비 : 16,300원*27명*1회=	441,000
								(성립전_1추)체험비 : 303,500원*2회=	607,000
			2.[초]현장학습		2,680	3,180	-500		
				1.교육운영비	2,680	3,180	-500	입장료 : 10,000원*45명*2회=	900,000
								차량임차료 : -700,000원*2대*1회=	-1,400,000
			3.[초]졸업여행		0	2,780	-2,780		
				1.여비	0	480	-480	인솔교사여비 : -120,000원*4명*1회=	-480,000
				2.교육운영비	0	2,300	-2,300	숙박비 : -25,000원*20명*1회=	-500,000
								식비 : -8,000원*20명*4식=	-640,000

2022학년도 세출예산명세서

예산구분 : 추경1회 (단위 : 천원)

사업					경정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원)	
정책	단위	세부	세부항목	원가통계비목					
								차량임차료 : -450,000원*1대*2일=	-900,000
								입장료 : -13,000원*20명*1회=	-260,000
		3.진로활동			4,685	2,770	1,915		
			1.[초]진로체험활동		4,685	2,770	1,915		
				1.운영수당	400	1,000	-600	계절학교강사료 : -50,000원*3명*2시간*2회=	-600,000
				2.교육운영비	4,285	1,770	2,515	(성립전_1추)산속등대체험비(보조금) : 28,000원*58명=	1,624,000
								(성립전_1추)아이언레포츠체험비(보조금) : 33,000원*27명=	891,000
4.선택적 교육활동					39,617	11,752	27,865		
	1.방과후학교 운영				30,017	6,952	23,065		
		1.돌봄교실운영			23,845	1,320	22,525		
			1.[초]돌봄교실운영		5,100	1,320	3,780		
				1.운영수당	500	320	180	(성립전_1추)대체강사비 : 10,000원*18시간=	180,000
				2.교육운영비	4,600	1,000	3,600	(성립전_1추)운영용품구입 : 35,000원*10종*6회=	2,100,000
								운영용품구입 : 50,000원*10종*3회=	1,500,000
			2.[초]돌봄전담사운영		18,745	0	18,745		
				1.무기계약직원인건비	17,196	0	17,196	(성립전_1추)인건비 : 1,193,660원*1명*3월=	3,581,000
								(성립전_1추)인건비 : 75,000원*1명*3월=	225,000
								(성립전_1추)인건비 : 1,327,500원*1명*6월=	7,965,000
								(성립전_1추)인건비 : 225,000원*1명*1월=	225,000
								(성립전_1추)인건비 : 1,053,330원*1명*3월=	3,160,000
								(성립전_1추)맞춤형복지비 : 550,000원*1명*1회=	550,000
								(성립전_1추)퇴직적립금 : 1,490,000원*1명*1회=	1,490,000
				2.무기계약직원법정부담금	1,549	0	1,549	(성립전_1추)4대보험기관부담금 : 130,500원*1명*6월=	783,000
								(성립전_1추)4대보험기관부담금 : 132,660원*1명*3월=	398,000
								(성립전_1추)4대보험기관부담금 : 122,660원*1명*3월=	368,000
		2.유치원방과후과정운영			6,172	5,632	540		
			1.[유]유치원 방과후 특성화 과정 운영		4,032	4,032	0		
				1.운영수당	4,032	4,032	0		

2022학년도 세출예산명세서

예산구분 : 추경1회 (단위 : 천원)

사업					경정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원)	
정책	단위	세부	세부항목	원가통계비목					
			2.[유]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1,500	0	1,500		
				1.교육운영비	1,500	0	1,500	(성립전_1추)자료구입 : 150,000원*10회=	1,500,000
			3.[유]유치원 방과후 급식 지원		640	1,600	-960		
				1.급식용식재료비	640	1,600	-960	급식비 : -6,000원*4명*40회=	-960,000
	2.독서활동				4,100	4,300	-200		
		1.독서활동운영			4,100	4,300	-200		
			1.[초]도서구입		4,100	4,100	0		
				1.교육운영비	2,100	2,100	0		
				2.도서구입비	2,000	2,000	0		
			2.[초]도서관운영		0	200	-200		
				1.교육운영비	0	200	-200	운영용품구입 : -20,000원*10종*1회=	-200,000
	3.기타 선택적 교육활동				5,500	500	5,000		
		1.기타선택적교육운영			500	500	0		
			1.[초]기후변화교육		500	500	0		
				1.교육운영비	500	500	0		
		2.다문화교육운영			5,000	0	5,000		
			1.[초]다문화교육프로그램운영		5,000	0	5,000		
				1.운영수당	3,500	0	3,500	(성립전_1추)다꿈사랑방학교학생상담강사료 : 50,000원*70회=	3,500,000
				2.학생복지비	1,500	0	1,500	(성립전_1추)다꿈사랑방학교프로그램운영비 : 100,000원*5종*3회=	1,500,000
5.교육활동 지원					25,950	13,956	11,994		
	1.교무업무 운영				5,684	3,000	2,684		
		1.교무학사운영			5,684	3,000	2,684		
			1.[초]교무학사운영		984	1,000	-16		
				1.교육운영비	484	500	-16	교육계획서제작 : -16,000원*1부*1회=	-16,000
				2.일반업무추진비	500	500	0		
			2.[초]입학식 및 졸업식		2,000	2,000	0		
				1.교육운영비	2,000	2,000	0		
			3.[초]초등교사교육과정운영		2,700	0	2,700		

2022학년도 세출예산명세서

예산구분 : 추경1회 (단위 : 천원)

사업					경정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원)	
정책	단위	세부	세부항목	원가통계비목					
				1.교육운영비	2,300	0	2,300	(성립전_1추)교육과정운영물품구입 : 100,000원*23종=	2,300,000
				2.목적사업업무추진비	400	0	400	(성립전_1추)협의회비 : 100,000원*4회=	400,000
	2.생활지도운영				1,100	1,100	0		
		1.학생생활상담지도			1,000	1,000	0		
			1.[초]위클래스운영		1,000	1,000	0		
				1.운영수당	1,000	1,000	0		
		2.학생안전교육			100	100	0		
			1.[초]안전교육		100	100	0		
				1.교육운영비	100	100	0		
	3.학습지원실 운영				3,860	3,856	4		
		1.방송실운영			0	500	-500		
			1.[초]방송실운영		0	500	-500		
				1.교육운영비	0	500	-500	방송장비수리및운영용품구입 : -250,000원*2회=	-500,000
		2.정보화실운영			3,860	3,356	504		
			1.[초]학교정보화지원		3,860	3,356	504		
				1.교육운영비	3,560	3,056	504	전산장비유지관리비 : 84,000원*6월=	504,000
				2.기타자산취득비	300	300	0		
	4.교육여건 개선				15,306	6,000	9,306		
		1.교육환경개선			15,306	6,000	9,306		
			1.[초]교실환경개선		15,306	6,000	9,306		
				1.일반수용비	14,200	0	14,200	교실난방설비 : 14,200,000원*1실=	14,200,000
				2.비품구입비	1,106	6,000	-4,894	교실기자재 확충 : -1,223,500원*2종*2실=	-4,894,000
6.학교 일반운영					157,559	113,409	44,150		
	1.학교기관 운영				92,414	53,523	38,891		
		1.부서기본운영			32,344	34,044	-1,700		
			1.[초]교장실운영		7,000	7,000	0		
				1.일반업무추진비	4,000	4,000	0		
				2.직책급업무수행경비	3,000	3,000	0		

2022학년도 세출예산명세서

예산구분 : 추경1회 (단위 : 천원)

사업					경정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원)	
정책	단위	세부	세부항목	원가통계비목					
			2.[초]행정실운영		24,344	26,044	-1,700		
				1.일반수용비	6,570	5,270	1,300	행정장비소모품 : 126,000원*5종*2회=	1,260,000
								신문구독 : 10,000원*1종*4월=	40,000
				2.기타공공요금	350	350	0		
				3.여비	14,440	14,440	0		
				4.교직원복지비	384	384	0		
				5.일반업무추진비	600	600	0		
				6.비품구입비	2,000	5,000	-3,000	행정장비및집기구입 : -500,000원*6종=	-3,000,000
			3.[초]교무부운영		1,000	1,000	0		
				1.일반수용비	1,000	1,000	0		
		2.병설유치원기본운영			19,492	19,479	13		
			1.[유]유치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4,500	4,500	0		
				1.전기요금	4,200	4,200	0		
				2.기타공공요금	300	300	0		
			2.[유]유치원운영		10,130	10,117	13		
				1.일반수용비	6,130	6,617	-487	실외놀이시설정비 : -487,000원*1종*1회=	-487,000
				2.여비	1,100	600	500	관내외출장여비 : 20,000원*1명*25회=	500,000
				3.학생복지비	500	500	0		
				4.비품구입비	2,400	2,400	0		
			3.[유]유치원하모니자원봉사자운영		4,862	4,862	0		
				1.운영수당	4,862	4,862	0		
		3.행정지원인력운용			40,578	0	40,578		
			1.[초]시설관리원인건비		21,184	0	21,184		
				1.무기계약직원인건비	19,307	0	19,307	(성립전_1추)인건비 : 150,000원*1명*1월=	150,000
								(성립전_1추)인건비 : 410,000원*1명*1월=	410,000
								(성립전_1추)인건비 : 1,420,000원*1명*4월=	5,680,000
								(성립전_1추)인건비 : 1,686,500원*1명*6월=	10,119,000
								(성립전_1추)퇴직적립금 : 1,462,000원*1명*1회=	1,462,000

2022학년도 세출예산명세서

예산구분 : 추경1회 (단위 : 천원)

사업					경정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원)	
정책	단위	세부	세부항목	원가통계비목					
								(성립전_1추)맞춤형복지비 : 550,000원*1명*1회=	550,000
								(성립전_1추)연차수당 : 877,000원*1명*1회=	877,000
								(성립전_1추)연차수당 : 59,000원*1명*1회=	59,000
				2.무기계약직원법정부담금	1,877	0	1,877	(성립전_1추)4대보험기관부담금 : 235,250원*1명*4월=	941,000
								(성립전_1추)4대보험기관부담금 : 156,000원*1명*6월=	936,000
			2.[초]청소원인건비		19,394	0	19,394		
				1.기간제직원인건비	17,670	0	17,670	(성립전_1추)맞춤형복지비 : 550,000원*1명*1회=	550,000
								(성립전_1추)인건비 : 1,175,000원*1명*12월=	14,100,000
								(성립전_1추)인건비 : 525,000원*1명*1월=	525,000
								(성립전_1추)연차수당 : 765,000원*1명*1회=	765,000
								(성립전_1추)퇴직적립금 : 1,500,000원*1명*1회=	1,500,000
								(성립전_1추)퇴직적립금 : 30,000원*1명*1회=	30,000
								(성립전_1추)건강검진비 : 200,000원*1명*1회=	200,000
				2.기간제직원법정부담금	1,724	0	1,724	(성립전_1추)4대보험기관부담금 : 143,660원*1명*12월=	1,724,000
	2.시설 장비 유지				62,827	57,086	5,741		
		1.학교시설장비유지			62,827	57,086	5,741		
			1.[초]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		20,680	19,540	1,140		
				1.전기요금	13,000	12,000	1,000	전기요금 : 1,000,000원*1월=	1,000,000
				2.상하수도료	700	700	0		
				3.기타공공요금	6,980	6,840	140	인터넷통신비 : 140,000원*1월=	140,000
			2.[초]연료비		607	607	0		
				1.연료비	607	607	0		
			3.[초]시설관리용역		16,333	12,986	3,347		
				1.일반수용비	16,333	12,986	3,347	(성립전_1추)교육시설안전인증사업비 : 3,347,000원*1회=	3,347,000
			4.[초]시설일반관리		20,764	19,750	1,014		
				1.기간제직원인건비	1,400	1,000	400	일용인부 : 100,000원*2명*2회=	400,000
				2.일반수용비	18,464	17,850	614	전기정기검사수수료 : 614,000원*1회=	614,000
				3.교직원복지비	900	900	0		

2022학년도 세출예산명세서

예산구분 : 추경1회 (단위 : 천원)

사업					경정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원)	
정책	단위	세부	세부항목	원가통계비목					
			5.[초]화장실관리		1,563	1,563	0		
				1.일반수용비	1,563	1,563	0		
			6.[초]당직관리		2,880	2,640	240		
				1.일반수용비	2,880	2,640	240	무인경비용역료 : 240,000원*1월=	240,000
	3.학교운영 협력				2,318	2,800	-482		
		1.학교운영위원회운영			800	800	0		
			1.[초]학교운영위원회운영		800	800	0		
				1.일반업무추진비	800	800	0		
		2.학부모협력			1,448	1,000	448		
			1.[초]학부모교육		1,448	1,000	448		
				1.일반수용비	914	800	114	운영용품구입 : 22,800원*5명*1회=	114,000
				2.운영수당	334	0	334	강사료 : 334,000원*1명*1회=	334,000
				3.일반업무추진비	200	200	0		
		3.관계기관협력			70	1,000	-930		
			1.[초]개교100주년기념행사		70	1,000	-930		
				1.일반수용비	70	1,000	-930	행사용품구입 : -93,000원*10종*1회=	-930,000
7.학교 재무활동					1,639	1,639	0		
	1.예비비				1,639	1,639	0		
		1.예비비			1,639	1,639	0		
			1.[초]예비비		1,009	1,009	0		
				1.예비비	1,009	1,009	0		
			2.[유]유치원예비비		630	630	0		
				1.예비비	630	630	0		
세출합계					497,194	302,749	194,445		